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 9. 12 선고 2024나653 판결 [건물명도 및 대지인도 등]

##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 9. 12 선고 2024나653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가합30713 판결

## 전문

원고, 피항소인 춘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열

피고, 항소인 A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복

변론종결 2024. 9. 5.

판결선고 2024. 9. 12.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가합30713 판결

## 주문

-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동산을 인도하고,  
나. 춘천시 C 잡종지 1,772.1㎡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6.5㎡ 건물 및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7.1㎡ 건물을 인도하고,

다. 17,416,101원과 2023. 1. 1.부터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56,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동산을 인도하고

나. 춘천시 C 잡종지 1,772.1㎡1)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6.5㎡ 건물2) 및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7.1㎡ 건물3) 을 인도하고,

다. 17,416,101원과 2023. 1. 1.부터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56,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별지1 목록 제3항 동산 및 청구취지 나항 기재 각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4) 제1심판결 제2면 8행부터 10행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각 건물 및 별지1 목록 제3항 동산(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각 건물, 이 사건 지장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제1심판결 제2면 12행의 “이 사건 부동산에”를 “이 사건 토지 및 별지1 목록 제2항 건물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5행의 “갑 제1, 3, 4호증의 각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춘천지사에 대한 감정축탁결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6행, 5행 및 4행, 제4면 6행의 각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및 별지1 목록 제2항 건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의 “이 사건 건물”을 “별지1 목록 제2항 건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5행의 “보일 뿐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신축한 교회로 이전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 조항을 두지 아니하였다.』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협의취득 당시 원고와 대부로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협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을 보장한다거나 사용승인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원종찬, 판사 박동욱, 판사 홍순건

별지

- 1) 별지1 목록 제1항 토지이다.
- 2) 2024. 9.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건물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원고의 2024. 7. 26.자 측량감정촉탁신청, 2024. 9.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첨부 소송물가액산출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 3) 이하 별지1 목록 제2항 건물과 위 각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 4) 다만 제1심판결 별지 목록은 이 법원 별지1 목록으로 대체한다.